제 목	국 문	의료분쟁시 적절한 배상기준에 대한 연구
	영 문	A study on reasonable indemnity standard in malparctic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민혜영, *손명세, *김한중, **신현호, ***김기경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과,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영 문	*Heayoung Min, *Myongsei Sohn, *Han Joong Kim, **Hyunho Shin, ***Kikyoung Kim *Dept. of Prev. Med.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 Yonsei Univ.,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민 혜 영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6년 12월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전술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 정확하게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의료분쟁의 현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승소판결에 나타난 여러 요인 중에서 배상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변수의 의미를 파악한다.

둘째, 환자승소판결과 환자패소판결을 비교하여 어느 변수에 의해 차이가 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셋째, 진료과별로, 치료형태를 나누어 배상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넷째, 위의 분석 결과 나타난 요인을 이용하여 분석 모형을 설정한 후 배상금 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여 합리적인 의사손해배상보험제도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2. 연구 방법

분석에서 일차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67년부터 95년도까지 서울민사법원에서 판결된 판결문과 의료분쟁 담당변호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판결문이 중심이 되고 이에 부가하여 판결문에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피고측 변수는 의사협회의 기록을 참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것은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액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원고측에 대한 변수와 피고측에 대한 변수, 질병명, 처치유형, 최종질병명, 원고의 장애상태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의 1단계에서는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배상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의한 변수를 찾아내고, 2단계 분석에서는 진료과목별로 질병과 처치형태별로 유형화하여 배상금의 범위를 찾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배상금을 환산해 보는 데 첫째는 패소한 판례와 공제회에서 소송으로 넘어가 화해로 끝난 화해조서를 가상자료로 만들어서 이 판례를 승소한 판결중 비슷한 사례에 적용한 후 승소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배상금을 계산해 낸다. 이때 고려하는 변수로는 나이, 가동년수, 직업 등의 변수를 계산에 삽입한다.

둘째는 모든 판결문의 연도를 통일시키기 하여 각 연도별로 배상금에 임금상승율과 인플레이션을 최근 년도로 맞추어 계산한 후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분석하여 배상금을 계산해 본다.

3. 연구결과

이 연구는 67년에서 95년사이의 128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환자가 승소한 경우는 62건, 기각은 44건, 항소 12건, 그리고 화해 등의 조서는 22건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가 37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정형외과, 외과, 내과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직위별 의사는 전문의가 101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환자가 방문한 경로는 입원이 87건, 외래가 27건, 응급실이 14건이었고, 소송이 제기된 환자의 손상 및 장애의 유형은 정신적 피해, 손상, 일부장애, 전신장애, 사망으로 분류한 결과, 사망의 경우가 52건, 손상이 27건, 일부장애 24건, 전신장애가 13건, 정신적 피해가 1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과 관련된 의료적 행위에 우선 진료과와, 내원이유, 귀책사유로 인정된 의료적 행위, 그리고 사고 후의 손상 • 장애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사고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진료과별 ——> 내원이유 ——> 귀책사유로 인정된 의료적 행위 ——> 사고후 손상 • 장애

4. 고찰

이 연구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공제회자료, 그리고 의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모아진 판결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결과가 아니므로 지역적인 발생 분포나 전반적인 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알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리고 67년부터 95년까지의 18년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각각 적용해 왔던 법리나 배상 기준들이 조금씩은 상이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년도로 기준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정들을 필요로 하였고 이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실제 각 유형별로 의료분쟁의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한 심도 깊은 연구가 추후 반드시 필요하다.